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2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다

담당변호사 김광희

**피고B**

**변론 종결**2020. 5. 12.

**판결 선고**2020.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판사홍예연**

별지